

회에 접수되는 중재신청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와 60%를 상회하는 피해구제율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역으로 아직까지도 언론의 반론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비단 언론중재신청사건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자율규제기구라 할 수 있는 신문윤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반론권 보장 미흡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가운데 1999년과 2000년에 연속으로 제재사유 1위를 차지한데서도 알 수 있다.²⁾

이 글은 지난 5년간 광주중재부에서 접수·처리한 중재신청 사건을 중심으로 중재신청사건의 추이와 그 처리결과를 살펴보고, 광주·전남 지역언론의 보도 양태를 통해 그 문제점을 진단해보고자 한다. 중재신청 대상이 된 보도가 반드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신청 대상보도가 오보라는 평가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중재신청 대상 보도가 오보는 아니라 할지라도 보다 바람직한 보도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무리한 추출은 아니라고 본다.

II. 언론중재신청사건 처리 현황 및 추세

1. 개괄

언론중재위원회가 1981년 창립이후 2003년까지 처리한 중재신청사건 수는 총 7,592건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62.9%)의 사건은 서울중재부 관할이었다. 서울과 지방간 중재신청사건 구성 비율은 연도별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대략 6:4 정도이다. 전국의 지방중재부 가운데 광주중재부는 2003년까지 총 408건을 처리하여 경기중재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중재부의 중재신청사건 처리비중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 경기>광주>부산중재부의 순이나 경기와 광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중재부의 비중은 5%를 넘지 않는 미약한 수준이다.

2) 중앙일보, 2001. 5. 8.

중재신청사건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까지만 해도 두 자리 숫자에 머물던 중재신청은 1989년 121건으로 첫 세 자리 수에 진입한 이래 1994년에 500건을 넘어섰고 1997년을 제외하고는 500건 이상의 중재신청 추이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3년에는 역대 가장 많은 724건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1980년대 말부터 중재신청이 급증한 이유로는 첫째, 정기간행물의 등록 요건 완화에 따른 대중매체의 급증과 매체환경의 변화 둘째, 언론중재 위원회의 인지도 상승 셋째, 87년 민주화 운동으로 고양된 국민들의 권리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³⁾

처리결과, 2003년까지의 전체 중재신청사건 7,592건 가운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2,378건으로 31.3%의 합의율을 보였다. 중재처리결과와 무관하게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58.6%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의에 이른 사건은 3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피해구제율이 6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진 것은 중재신청 후 언론사 스스로 반론 내지 정정보도를 한 경우나 중재결정을 받아들인 경우, 중재불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한 경우 등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2. 광주중재부의 중재신청사건 처리현황(2000년부터 현재까지)

2000년 이후 광주중재부에서 처리한 중재신청 사건 수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에 28건이었던 중재신청은 지난해 40건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추세가 이 지역의 언론매체 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광주·전남지역의 매체 수는 언론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기형적이라고도 평가되고 있다.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는 11개이며, 올해 새롭게 창간된 무료일간지를 포함하면 무려 13개나 된다. 지역 주간신문이나 방송까지 고려한다면 많은 언론매체 수에 비해 오히려 적은 중재신청이라고

3) 한동원, “중재신청사건으로 본 언론중재 20년”, 『언론중재』, 2001년 봄, p.30.

도 볼 수 있다. 이는 이 지역 언론매체의 보도가 정도를 견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왜곡된 언론시장이 초래한 이 지역 수용자들의 해당 지역 매체 접촉도가 매우 낮은 결과일 수도 있다.

지역매체 수와 중재신청과의 상관관계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어찌됐든 앞서 언급했듯이 광주지역의 언론중재신청 사건 수는 서울과 경기중재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2000년 이후 광주중재부의 중재신청사건 처리 현황

연도	신청건수	합의	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불성립결정	취하	기각	각하
			동의	이의				
2000	28	6		1	1	20		
2001	32	11			8	7	6	
2002	39	15	2	1	8	13		
2003	40	16			10	14		
2004	26	8			7	11		
계	165	56	2	2	34	65	6	

중재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접수된 총 165건 가운데 56건이 합의되어 33.9%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10건 가운데 약 3건 정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언론사간에 원만히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광주중재부의 합의율은 전국 평균 합의율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도에는 21.4%를 기록하여 전국 평균 합의율에 비해 10% 이상 떨어졌지만 <표 2>에서 보듯이 그 이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오히려 높은 해도 있었다. 그러나 중재처리 결과와 관계없이 피해구제보도가 행해진 경우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 피해구제보도율과 10%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0년의 피해구제보도율 32.1%는 전국 중재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03년에도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피해구제보도율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중재심리 결과, 양 당사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 피해구제보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반증이 된다. 즉 언론중재 신청 후 언론사가 자발적으로 정정 내지 반론보도를 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 언론에 비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재신청사건의 상당수는 중재신청사건 접수 후, 해당 언론사가 자신의 보도에 대해 중재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여 언론사와 신청인간 접촉을 통해 중재심리 전에 반론 내지 정정보도를 하여 중재신청사건을 종결짓는 경우가 많다. 언론보도 피해자에 대한 이 지역 언론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표 2> 합의율 및 피해구제보도율 비교

연도	합의율		피해구제보도율	
	광주중재부	전국평균	광주중재부	전국평균
2000	21.4	32.6	32.1	61.1
2001	34.4	34.7	46.8	59.5
2002	38.5	35.6	61.5	61.1
2003	40.0	39.6	55.0	65.1
2004	30.8	34.9	69.2	64.8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나 사안에 따라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중재신청인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보도에 대해 신청인이 반론보도청구를 할 것인가, 정정보도청구를 할 것인가는 신청인의 자유의지에 속한다. 신청인이 어떤 청구를 주로 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중재부에 접수된 중재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정정보도청구를 선호하고 있다. 정정보도청구를 선호하는 것은 비단 광주중재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신청인이 이 지역에 연고를 둔 점을 감안한다면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정정보도청구 선호경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의 경우 정정보도청구 비율이 무려 90%에 가까웠다. 이후 반론보도청구 비중이 점차 높아져 2003년에는 전

국 평균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3> 중재신청 청구명별 비교

연도	광주중재부			전국평균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
2000	3(10.7%)	25(89.3%)	·	211(34.8%)	368(60.6%)	28(4.6%)
2001	9(28.1%)	23(71.9%)	·	221(33.5%)	418(63.4%)	20(3.0%)
2002	13(33.3%)	26(66.7%)	·	201(39.3%)	307(60.1%)	3(0.6%)
2003	12(30%)	28(70%)	·	216(29.8%)	503(69.4)	5(0.7%)

신청인이 정정보도를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나 사실관계의 입증에 어렵거나 언론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만으로 충분한 경우에도 정정보도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이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신청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정보도청구에 비해 반론보도청구를 한 경우 합의율과 피해구제보도율이 높은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2003년도 중재신청처리결과를 보면 반론보도청구 사건의 합의율이 46.8%인 반면 정정보도청구사건은 36.8%로 10%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구제보도율 역시 반론보도청구사건은 정정보도청구사건에 비해 10% 높은 7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신청은 개인이 신청한 경우가 전체 165건 가운데 69건으로 41.8%를 보여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단체가 신청한 사건은 34건(20.6%), 지자체·공공단체가 31건(18.8%)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신청인 유형은 전국적인 경향치와 매우 유사하다.

<표 4> 중재신청인 유형

구분 연도	구분							계
	개인	일반 단체	회사	교육 기관	종교 단체	국 가 기관	지자체 · 공공단체	
2000	13	1					14	28
2001	11	7	4	2			8	32
2002	22	4	6		2	1	4	39
2003	8	20	5			6	1	40
2004	15	2			1	4	4	26
계	69	34	15	2	3	11	31	165

중재신청 대상이 되었던 매체 유형을 살펴보면, 중재신청의 대부분은 지방 일간지를 상대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된 중재신청이 전체 사건 중 7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간신문이 15.2%로 나타났다. 방송매체를 상대로 제기된 중재신청 사건 수는 총 14건인데, 이 가운데 라디오 방송매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중재신청이 6건으로 TV매체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 수(8건)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표 5> 매체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구분 연도	신청 건수	신문			방송		잡지
		지방 일간지	주간 신문	기타 신문	TV	라디오	
2000	28	24	1		2	1	
2001	32	18	10		3	1	
2002	39	34	3		1	1	
2003	40	31	6		1		2
2004	26	17	5		1	3	
계	165	124	25	0	8	6	2